

본회, 자조금 시행규칙(안) 마련

◇...본회는 자조금 적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한양계협회,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농발법」 시행규칙(안)을 마련, 정부에 제출했다. 다음은 본회 등 3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시행규칙(안) 전문이다. <편집자 주>

<p>농 어 촌 조 발 치 전 법</p>	<p>제13조(자조금의 적립지원)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, 운영방법,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시 행 령 (안)</p>	<p>제19조(자조금의 조성방법)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조성한 자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조성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기준, 운용, 관리,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제20조(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)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우유 2. 돼지 3. 닭 4.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제21조(보조금의 지급기준 등)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농어민으로부터 조성하여 자조금으로 매년 적립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</p>
<p>시 행 규 칙 (안)</p>	<p>제 조(자조금의 조성방법) 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과 같다. 1. 특정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. 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거출업무는 도축장, 도계장, 우유 및 계란처리장 등 농산물 처리장 또는 배합사료공장 등의 운영자가 대행한다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.) 3.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는 매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4.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. 제 조(자조금의 조성기준) 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처리장 또는 배합사료공장 등에서 거출하는 자조금의 조성기준은 국내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. 제 조(자조금의 관리) (1) 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의 관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생산자단체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가 관리한다.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, 매 회계연도별로 자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
시행규칙	<p>(3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지정코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은 자조금을 집행할 여건이 성숙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자조금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부터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 조(자조금의 운영) 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생산자단체별로 자조금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제 조(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) (1)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은 축산업자, 학자, 공무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업종별 생산단체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임명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위원의 과반수는 축산업자로 임명되어야 한다.</p> <p>(2) 위원장과 부위원장, 간사는 위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.</p> <p>(3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제 조(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) (1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조금으로 충당한다. 단, 경비는 자조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(2) 모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단, 업무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는다.</p> <p>제 조(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2.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3. 기타 자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 <p>제 조(자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) (1)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 임시회의는 업무진행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.</p> <p>(2)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원장이 긴급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 의결할 수 있다.</p> <p>(3) 위원회는 회의일정과 의결사항에 관하여 모든 위원과 업종별 생산단체장,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 조(자조금의 집행) 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축산물 소비 촉진사업 2.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3. 조사연구사업 4.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5. 신제품 개발사업 6. 정책개발사업 7. 기타 자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<p>제 조(과태료) (1) 시행규칙 제 조(자조금의 조성방법)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 <p>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(3)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</p> <p>제 조(자조금의 운영세칙) 이 시행규칙 이외의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기준, 운영, 관리, 집행 등 필요한 세부 시행방법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비밀</p>
------	--